

발행인 : 서울특별시

편집인 : 공보관

731-6111~3

서울시보

기관 의 장

선

람

제 2026 호 1997. 2. 15.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훈 령
 - 제 849 호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복무수칙 3
- 고 시
 - 제 1997 - 25호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 9
 - 제 1997 - 31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인가 9
 - 제 1997 - 32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인가 10
- 공 고
 - 제 1997 - 35호 기술용역사업집행계획 10
 - 제 1997 - 36호 의료보호진료기관지정및지정취소 14
 - 제 1997 - 37호 시의회부의안건 14
 - 제 1997 - 42호 서울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변경공람 15
 - 제 1997 - 43호 시의회부의안건 15
- 구 고 시
 - 제 1997 - 3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중강) 15
 - 제 1997 - 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상록) 16
 - 제 1997 - 7호 여아제1주거환경개선지구개선계획변경(강북) 17

<이월계속>

일										
람										



제 1997 - 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강부)	18
제 1997 - 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구로)	19
● 구 공 고		
제 1997 - 24호	서소문구역제13지구재개발사업구역변경(건축계획)지정을위한공람(중구)	19
제 1997 - 25호	서울역-서소문2구역제3지구재개발구역변경(건축계획)지정을위한공람(중구)	20
제 1997 - 24호	도시계획안공람(성동)	20
제 1997 - 37호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공람(마포)	21
제 1997 - 24호	도시계획안공람(금천)	22
제 1997 - 21호	도시계획사업(일반도로)실시계획공람(동작)	22
제 1997 - 36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24
제 1997 - 27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송파)	24
제 1997 - 1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강동)	25
● 사업소고시		
제 1997 - 13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26
● 교육청공고		
제 1997 - 8호	시의회부의안전	26
● 인사발령		
		26
● 기 타		
	감정	28
	출입통지	37

훈 령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선부무수칙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7. 2. 15

서울특별시장 조 순 인

● 서울특별시훈령제849호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선부무수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서울특별시 감사실 (이하 "감사실"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복무자세와 감사활동 등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감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감사공무원은 이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역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복무자세

제4조(서약의무) 감사공무원은 감사실 진입시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수행) 감사공무원은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질향상) 감사공무원은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외무수술 금지) ①감사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는 누구라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권정착행위 등 금지) 감사공무원은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관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사청탁, 인·허가 등 각종 이권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금품 등 수수 및 증여행위 금지) ①감사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관공무원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유가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를 금하며 부득이 금품이나 유가물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상급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②감사공무원은 사적이익을 얻고자 관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감사공무원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관공무원 및 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행위에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사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급적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식사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감사대상기관 직원 등과 식사하는 경우 직상급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파벌조성행위 금지) 감사공무원은 직연, 혈연, 학연 등의 사유로 동료간에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동료관계) ①감사공무원은 상·하급장 및 동료를 제벌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직장에 절을 지켜야 한다.

②감사공무원은 상벌 또는 선제적 장애 등을 이유로 동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상명하부관계) ①감사공무원은 직 무상 상명하부관계중 유지함으로써 위계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상급자는 하급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경 롱하고 이를 수렴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상급자는 경소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적인 인애 공적 상하관계가 연상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직내란 등의 사전이용금지) 감사 공무원은 각종 직할·문자 등(전화, 음성 동부, 사무용품, 차량, 컴퓨터, 복사기, 복 시밀러 등) 공직재산용 공직목적 이외용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감사활동 등

제14조(감사실시기준) ①감사요원(이하 "조사요원, 민원조사요원"을 포함한다)은 대상기관업무에 대한 합법성뿐만 아니라 경제성·효율성·효과성 등 합목적성에 대 하여도 감사(이하 "특별감사, 조사, 민원 조사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감사범위, 방법, 절차 및 감 사결과의 평가, 보고에 있어 공정하고 객 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준비) ①감사반장(이하 "조사 반장, 민원조사반장 등"을 포함한다)은 감사성격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 기 전에 감사목적, 방법, 범위 등 철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감사실시에 있어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착안사항의 연구·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③감사반장은 외부전문가를 감사활동에 활용할 때에는 전문성 및 독립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제16조(서약서제출 등) ①감사요원은 감사 착수 이전에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과 랑 관련자 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특수관계 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요원은 실지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 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 체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귀경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자격) ①감사요원은 선임감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복 기관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사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청탁·압력이나 음복을 버리 고 증명정당하게 독립하여 감사하여야 한 다.

③감사요원은 피감사자에게 충분한 변명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감사요원은 부장 및 등등을 단정화해 하여야 한다.

⑤감사요원은 피감사자에게 존댓말을 사 용하여야 하며, 취임감이나 특권의식을 갖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감사실시) ①감사반장은 감사서 수 간기관의 일상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감사실시 사항을 일일감사 보고 등을 통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감사요원은 감사사 지적된 사항에 대하 여 사전 조치를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알 의로 제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증거서등 등) ①감사요원은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기 위하여 신뢰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2. 감사요원은 감사대상 부의 장·과장·수석
직관 직원의 출무 등을 보고하는 경우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절차) ① 감사요원(감사반장 및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 민원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사전감사 또는 설치감사한
사항 중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 해당하
는 사항의 발생하였을 표출한 일회적의 표
출을 한다.

1. 직장과 부의장부족 다의한 발생한 수
입을 장로 부의장부를 발전시켜 증가
하는

2. 직분외구한 사항이 사실조사외 소출
등으로 사후적 판부될 경우

3. 부인감사 등으로 불의를 야기한 경우

제21조(주요사건의 사전조치) 감사반장은
적출된 사항 중 감사대상공무원에 대한
경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본청의
경우 실·국장) 및 관계장부에게 사전대응
을 지시 집행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직권적 대한 감독) 감사반장은 감
사장 밖외를 판문하고 직인들에 대한 감
독을 철저의 하여 감사공무원으로서의 품
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기간준수) 감사요원은 감사일
무를 최단기간 내에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업무가 종료되면 수경기간에 구애됨이 없
이 즉시 귀청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전념) 감사요원은 감사출장 중
사사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업무수행 이외
의 지적으로 출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관계인 등의 청탁처리) 감사요원은
적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대상기관 직원이
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때
에는 이를 감사반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결과처리 및 보고) ① 감사결과

처리한 사항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
한 후, 직와 직관 직관외 부의장 향방이
로 감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보고는 간결성, 명료성, 일관
성,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및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

제27조(사무관리) 감사요원은 감사결과 조
분외구한 사항을 부외외 그 이해관계
질적외 관리외 감사외 실행성의 확보외
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생활기준

제28조(공직수행) ① 감사공무원은 공직으로
부외 직관의 대상외 되는 중외외 하외 하
나외외 공직자의 명복을 외외외 불외외
타외외외 아니한다.

제29조(생활기준) ① 감사공무원은 이웃영
제 존경외 청승달는 가정생활을 한다.

2. 감사공무원은 사적외 낭비없는 절제한
소비생활을 한다.

3. 감사공무원은 자신을 절제하여 시민들
외 빈축을 사거나 과도한 미용을 외하는
오락외 외외외외외 참가하여야 한다.

4. 감사공무원은 불우한 이웃에 외외외 외
한 온정을 지녀야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
에 힘쓴다.

5. 감사공무원은 시정에 솔선수범하여 공
직자로서 모범외 생활을 한다.

제30조(행동기준) ① 감사공무원은 무기형
외나 불건전한 부외 등 주외외외외 외
만을 행외외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사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정당한 부외외외외 외
외외외 외를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사공무원은 공직자의 선분을 벗어
는 과도한 재정보외외외 외를 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이 수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특별시 감사실 감사, 조사, 민원 조사공무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 1. 본인은 사인의 권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를 전념한다.
-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 1. 본인은 제직 중은 물론 퇴직 및 전출 후에도 이권의 청탁을 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이번 감사, 조사, 민원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상하
고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추호라도 사정이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외부압력에 영향
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에는 전
술 등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소속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복수관계인 신고서

본인은 감사, 조사, 민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기관 직원
이나 감사, 조사, 민원조사사양 관련자 중 복수관계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복수관계인 인적사항			복수관계인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선 고 인 :소속 직 성명 (인)
 감사, 조사, 민원조사반장(공발):소속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37-8
0554

(제정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어유

서울특별시 감사실소속 공무원의 복무자세와 감사활동 등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사공무원의 복무자세
- 감사공무원의 감사활동
- 감사공무원의 생활자세 등

●서울특별시고시제1997-25호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

1.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설계지구·상세계획구역의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 2. 15

서울특별시장

고 시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설계지구·상세계획구역 결정조서

순번	위 치	용도지역 변경내역		면적(m ²)	지구 및 구역 면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1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 일대	일반주거 지 역	일반상업 지 역	10,100	상세계획구역 (53,700)	가좌지구 중 심
		준주거 지 역	일반상업 지 역	15,000		
		일반주거 지 역	준주거 지 역	13,600		
2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반주거 지 역	근린상업 지 역	5,600	도시설계지구 (16,000) 상세계획구역 (9,200)	아현지구 중 심
		준주거 지 역	근린상업 지 역	2,600		
		일반주거 지 역	준주거 지 역	28,200		
3	서대문구 홍은동 274 일대	일반주거지 지 역	준주거지 지 역	32,400	도시설계지구 (32,400)	구청생활 권 중심

나. 도면: 생략(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서울특별시고시제1997-31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97호(95. 4. 25)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자제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성내역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였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2. 15
서울특별시청

가. 변경내용

구	본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업	규	도	주차대수 320대	주차대수 269대		
사업의	착수준공예정	연월일		95. 4. 18~96. 4. 31	95. 4. 18~97. 2. 28		

나. 기타 내용은 변동사항 없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였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2. 15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고시제 1997-32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259호(94. 8. 10)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차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혼련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가. 변경내용

구	본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업	규	도	주차대수 1,398대	주차대수 1,303대		
사업의	착수준공예정	연월일		94. 8. 3~96. 12. 31	94. 8. 3~97. 4. 30		

나. 기타 내용은 변동사항 없음.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2. 15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7-35호

기술용역사업집행계획

(단위: 억만원)

연	번	용	역	명	시	행	기관명	용역사업의	예산 규모		입찰에	참가할
									총사업비	97예산		
1		중앙	자원	회수	시설	제기물	시결과	기본계획수립	480	300	97. 3	
		기본	계획	및	환경	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영향	평가					입찰안내서 작성				

연	주	의	명	사	영	영	역	사	업	의	예	산	규	모	일	차	일	출	향	가	액																								
년	요	요	명	성	영	영	역	사	업	의	예	산	규	모	일	차	일	출	향	가	액																								
2	강	식	자	원	회	수	시	설	계	기	물	-기	본	제	획	수	립	620	300	97. 3	정	시	기	필	요	한	사	향	공	가	중	당	사	자	로	하	는	제	약	관	한	편	명	및	
3	관	악	자	원	회	수	시	설	계	기	물	-기	본	제	획	수	립	480	200	97. 10	정	시	기	필	요	한	사	향	공	가	중	당	사	자	로	하	는	제	약	관	한	편	명	및	
4	금	천	자	원	회	수	시	설	계	기	물	-기	본	제	획	수	립	480	200	97. 10	정	시	기	필	요	한	사	향	공	가	중	당	사	자	로	하	는	제	약	관	한	편	명	및	
5	대	부	수	관	도	시	교	수	교	통	운	영	관	리	사	스	텔	수	800	800	97. 8	정	시	기	필	요	한	사	향	공	가	중	당	사	자	로	하	는	제	약	관	한	편	명	및
6	도	로	안	내	표	지	관	교	통	운	영	관	리	사	스	텔	수	400	400	97. 3	정	시	기	필	요	한	사	향	공	가	중	당	사	자	로	하	는	제	약	관	한	편	명	및	
7	서	울	시	도	시	배	정	비	계	획	과	-2001	년	특	도	서	울	시	1,350	1,350	97. 6	정	시	기	필	요	한	사	향	공	가	중	당	사	자	로	하	는	제	약	관	한	편	명	및
8	탄	천	하	수	처	리	장	하	수	처	리	과	-처	리	장	상	부	를	420	170	97. 4	정	시	기	필	요	한	사	향	공	가	중	당	사	자	로	하	는	제	약	관	한	편	명	및
9	탄	천	우	안	의	5	개	하	수	처	리	과	-6	개	하	천	차	집	418	418	97. 4	정	시	기	필	요	한	사	향	공	가	중	당	사	자	로	하	는	제	약	관	한	편	명	및
10	하	수	관	거	조	사	및	하	수	처	리	과	-면	적	: 31.2km ²	4,362	1,314	97. 6	정	시	기	필	요	한	사	향	공	가	중	당	사	자	로	하	는	제	약	관	한	편	명	및			
11	하	수	도	중	합	정	비	하	수	처	리	과	-면	적	: 20.8km ²	2,358	2,359	97. 6	정	시	기	필	요	한	사	향	공	가	중	당	사	자	로	하	는	제	약	관	한	편	명	및			

연	용	요	요	시	범	용역사업의	예산	규모	일	월	일	일	일
년	도	도	도	도	도	주요 내용	총사업비	'97예산	정	기	기	기	기
12	환경이송개발공진	타당성조사	최수과	화물운송	-역력선 및 관광선 확충 -경제성 분석	200	200	97.	4	국가총당사차 로하는 절약의 관한법령 및 건설기술관련			
13	지하철 7-8호선 2차	지 하 철	건설본부	총 30.52km	-7호선 : 25.97km -8호선 : 4.55km	1,830	449	97.	6	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			
14	낙성대배수지수저	상 수 도	상 수 도	-1차 배수지 5개소 11.5만톤	-2차 배수지 1개소 5 천톤	494	494	97.	3				
	가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상 수 도	사업본부	-가압시설 1식 -송배수관로 : 2.8km									
15	반포배수지	건설	상 수 도	-배수지건설 : 8만톤	-송배수관로 :	987	987	97.	3				
	기본 및 실시설계	상 수 도	사업본부	D=900~1800mm L=3.85km									
16	방배배수지	건설	상 수 도	-배수지건설 : 6만톤	-송배수관로 :	732	732	97.	3				
	기본 및 실시설계	상 수 도	사업본부	D=1200~1800mm L=3.1km									
17	상수도배급수관시	공감동 업무위탁	상 수 도	-간선배관 -배급수관정비 -소화전공사 -기타		1,700	1,700	97.	2				
18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대학관	서울시립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 4,000평		712	712	97.	5				
19	성진구역	도시기	종로구청	-지상공원조성 지침 및 지상 토지이용지 획 기본절계 -지하공간 기본절계 및 개발 개념 수립 -지상건축물 조성 지 침서 제안		400	400	97.	4				

연월	용도명	시행기관명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예산규모 총사업비 '97예산	입찰대 항시기	입찰참가액 최소한 사항
20	북권남도정단박스 병목구간 확장공 사 실시계획	용산구청	-하수박스 설치 -4 \times 2 \times (5.8B-4.5B) \times 2.6H \times 45L	192	192	97. 1 국가물당사자 르하는 계약 관한 법령 및
21	상동구 종합청사 - 건립 설계	성동구청	-대지: 5855평(20층 내외) -연면적: 9800평	2,109	2,109	97. 4 건설기술관련 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22	상봉동 일대 시가지 경비계획 수립	중랑구청	-도시기본시설확충방 안 -분리주변정비계획 -주거지조성계획	150	150	97. 3 시행
23	방학동 상동계곡 수질	도봉구청	-도시계획 수립	270	270	97. 7
24	구민체육센터 리	은평구청	-책임감리	567	100	97. 11
25	구립도서관 감리	은평구청	-책임감리	284	50	97. 10
26	천연-통계지구상 체계특구역 실시 설계	서대문구	-도시이용 도시기본시 설 건축물에 대한 상 세계획 수립	236	236	97. 7
27	도시설계	양천구청	-도시설계지구거정에 다른 도시설계	1,464	987	97. 4
28	사경로뱃동컴프강 신설공사 실시설 계	서초구청	-하수암거: 1,359m -컴프강설치: 1개소	280	280	97. 7
29	양재천공원 공원 화사업 책임감리	강남구청	-도심지, 라바덴, 자 전거도로, 근린체육 시설 -식생호안, 자연학습 관 등	165	165	97. 2
30	지하구조물정밀 안전진단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구조물상태 조사 -구조물측정 -구조물안전도 분석 및 평가 -보수보강대책 제시 -유지관리방안 제시	420	420	97. 5
31	1호선기계환기실 시설공사 기본조 사 설계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기계환기실 신설공 사 기본조사 설계: 12개소	600	300	97. 9

구분	시행	용역사업의	예산액	입찰액	입찰참가액
관	기관명	주요내용	총사업비	'97예산	경정기
32	지하철전승로	강 서울특별시-지하철 1-4호선 광	206	206	97. 5
	시스템구축	실시 상지하철 시스템 구축			
	실제	공사			

●서울특별시공고제1997-36호

의료보호진료기관지정및지정취소공고
 의료보호법 제10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진료기관의 의료보호진료기관을 다음과 같

이 지정 및 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7. 2. 15
 서울특별시장

1. 제2차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1개소)

지정번호	진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대표자)	진료과목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지정일
2-287	서울백재병원	용산구 657-59	한남동 노 동 두	신경과 외 4개과	261222- 1002412	793-0945	1997. 2. 10

2. 제2차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취소(1개소)

지정번호	진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대표자)	취소사유 (대표자)	취소지정일
2-246	강서성도병원	강서구 화곡3동 1066-20	양 장 중	제 법	97. 2. 10

●서울특별시공고제1997-37호

시의회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2. 15
 서울특별시장

구분	부의안건명	주관부서
동의안 (1건)	1. '97전국자치복원발행계획 동의안	예산총괄담당관
의견청취안 (7건)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강남구 도곡동 550 일대	시설계획과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 일대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영등포구 양화동 153 일대	
	4.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중구 만리동2가 6-1 일대	
	5. 도시계획시설(철도: 6, 7호선) 변경결정	

구분	부 의 안 건 명	주 관 부 서
의 건 의 안	6.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 - 강남동 747, 741 일대, 335 일대 의 3개 지역 7.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 - 은평구 갈현동 46, 구산동 2, 3 일대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공고제 1997-42호

서울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변경공람

1.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84호(96. 3. 22)로 서울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을 변경승인받은 지하철 6호선에 대하여 서울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하고자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7. 2. 1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도시철도건설사업
- (2) 명칭: 서울도시철도 6호선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 (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2) 설명: 서울특별시장 조 순

다. 변경내역

- (1) 사용할 토지조서(지하) 추가 및 변경

상 국외 변경은 속 나머지 부분은 변경 없음

가. 공람기간: 1997. 2. 15~1997. 3. 6 (20일간)

다.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리부(서울특별시 중구 두교동 19 전화: 775-8146~8) 또는 해당구 건설관리과

라. 관련도서: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서울특별시공고제 1997-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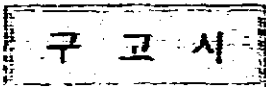
시의회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및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2. 15

서울특별시장

구분	부 의 안 건 명	주 관 부 서
동 의 안 (1건)	1. '97무상사용기간만료 지하도상가 관리계획 동의안	건설행정과



●중랑구고시제 1997-3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1996-5호(96. 1. 25)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

로 된 서울특별시행정안전위원회(안) 제3호의 규정과 일치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간토)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중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2. 15

중랑구청장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당우동 252-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용도 : 도시계획사업 (학교) 상용교통신호 송출공사

다. 사업지별 면적 및 규모 (변경 없음)

○ 토지면적 : 14,101.26㎡

○ 건축면적 : 2,358.81㎡

○ 건축연면적 : 12,682.37㎡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변경 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당우동 252-1

○ 성명 : 학교법인 응국학원 이사장 이인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연월일 : 1985. 6. 4 (변경 없음)

○ 준공예정일 : 당초 : 97. 1. 31

나. 사업 내역

사업명칭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비고
석관2동 신청사 전임로 확장공사	석관동 343-69~석관동 338-7간	폭 : 8m 연장 : 70m	
중암동 20~53 주변 도로 확장공사	중암동 44~중암동 53-47간	폭 : 6m 연장 : 200m	

다.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98. 12. 31까지
 마. 수공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

● 성북구고시제 1997-4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69. 1. 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90. 10. 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54호(92. 8. 3)로 지적승인된 "석관2동 신청사 전임로 확장공사"와 서울특별시고시 제656호(78. 12. 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21호(79. 9. 26)로 지적승인된 "중암동 20~53 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규정의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17호(97. 1. 20)로 공람공포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5조와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920-5405~8)와 건설관리과(920-3400~4)에 비치하여 토지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2. 15

성북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붙임

다.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3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따로붙임
 마. 따로붙임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각 1부

토 지 조 사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의뢰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토목과
 사업시행자주소 :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사업의 종류 : 석관동 신철사 진입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주소	지목	지적 (㎡)	전입면적 (㎡)	실제이용		소유자	
					상 황	성 명	주 소	소
1	석관동 343-69	도로	902	902	도	로	서울특별시	
2	343-81	대	3	3	-		이양성 드림구 미아동 8-76	
3	347-1	도로	60	60	-		이경희 마로구 강아현동 301	
4	338-1	도로	50	50	-		박기환 성북구 안암동 114	
5	338-679	대	22	22	-		국(철도청)	
6	338-7	철도	251	251	-		국(철도청)	
7	337-32	대	24	24	-		김동준 성북구 석관동 337-1	
8	337-33	대	11	11	-		김동준 성북구 석관동 337-1	
9	337-6	도로	43	43	-		서울특별시 성북구	
10	398-1	도로	312	312	-		국(건설부)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의뢰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토목과
 사업시행자주소 :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사업의 종류 : 종암동 20-53 주변 도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주소	지목	지적 (㎡)	전입면적 (㎡)	실제이용		소유자	
					상 황	성 명	주 소	소
1	종암동 48-36	대지	55	55	대	지	한은식 성북구 종암동 48-19	
2	종암동 47-3	대지	3	3	대	지	박기환 성북구 종암동 47-2	

물 건 조 사

연번	소재지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면적 (㎡)	실제이용		소유자	
					상 황	성 명	주 소	소
1	종암동 48-19	전 물	연화조슬레브	63	구락 및 침포	한은식	종암동 48-19	
		지장물		1식 1주	철대문 대수나루			

●강북구고시제1997-7호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지구개선계획변경
 1. 건설부고시 제1973-56호(93. 3. 5)로 지
 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7호 (94. 2. 12), 강북구고시 제1996-60호(96. 10. 14)로 개선계획수립 및 개선계획변경

된 미아제1구거환경개선지구와 대하여 도시계획소속주거환경개선지구위원회의 제1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주택과와 미아1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 2. 15

강북구청장

가. 지구명칭: 위치 및 면적

지 구 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미아제1구거환경개선지구	강북구 미아1동 791 일대	10,534	현장계량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전: 1994. 2. 12~1997. 2. 11

변경후: 1994. 2. 12~1998. 2. 11

다. 사업시행자: 강북구청장

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내용
- 건축물계량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기간 변경

마. 도서: 강북구청 주택과와 미아제1동 사무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주택과 (901-6380~4)로 문의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강북구고시 제96-10호(96. 3. 1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도시계획법 제25조(실시계획인가) 및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라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2. 15

강북구청장

●강북구고시제1997-8호

가. 사업개요

구분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 모	결정고시	지적고시	비고
당초	미아동 759-3 ~761-13	도시계획사업(도로) 미아8동 759~761 주변 도로개설공사	B=8m L=60m	서고354호 (90. 10. 24)	도로96-26호 (92. 7. 8)	
변경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나.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다. 사업기간: 1996. 3~1997.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조사: 별첨조서(변경분)

마.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강북구청 토목과에 비치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토목과 (901-64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고 시 (변경문)

작성명 : 마차8동 759-3번 주택 도로개설공사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소재지	수량	소유자	소재지
소재지	수량	소유자	소재지
소재지	수량	소유자	소재지
마차8동 759-3	1식	오상호	마차8동 759-3
마차8동 759-3	1식	오상호	마차8동 759-3
마차8동 759-3	1식	오상호	마차8동 759-3
마차8동 759-3	1식	오상호	마차8동 759-3

● 구로구고시제 1997-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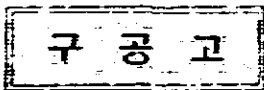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2. 15

구로구청장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가. 상호 : 동아건설산업(주)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가. 위치 : 구로구 고척동 53-4 외 33필지
 - 나. 대지면적 : 12,511.0㎡
 - 다. 건축연면적 : 47,242.61㎡
 - 라. 규모 : 10~23층 아파트 4개동 355세대 및 부대부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1997. 2~1999. 3



● 중구공고제 1997-24호

서소문지역제 13지구재개발사업구역변경(건축계획)지정을위한공람

1. 78. 9. 26 건설부고시 제285호로 건축지정되고 78. 12. 29 건설부고시 제415호로 사업계획 결정된 서소문구역 제1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변경(건축계획) 지정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토입니다.

2. 사업시행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역변경(건축계획) 지정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7. 2. 15

중구청장

가. 사업개요

- (1) 사업의 명칭 : 서소문구역 제13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중구 서소문동 58-17, 50
- (3) 시행면적 : 4,112.03㎡
- (4) 시행예정자 : 학교법인 명지학원

나.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지면적(m ²)	3,513.00	3,545.30	층수(상/하)	13/1	26/7
연면적(m ²)	21,173.00	61,537.47	주용도	학교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건적률(%)	-	52.60	높이(m)	-	111.25
용적률(%)	-	1,145.00	공공시설 위 치 및 면적	-	중구 서소문동 58 50 567.00m ²

다. 공람기간: 97. 2. 4~2. 18
라. 공람장소: 중구청 4층 도심개발과

● 중구공고제 1997-25호

서울역-서대문2구역제3지구재개발구역
변경(건축계획)지정을위한공람

1. 73. 9. 6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구역지정
되고 78. 12. 29 건설부고시 제429호로 사
업계획결정된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3지
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원방토전 대표 송동수로부터 도시계획
발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변경
(건축계획) 지정 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
를 송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임

나.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지면적(m ²)	1,544.0	1,674.5	층수(상/하)	14/3	19/4
연면적(m ²)	12,000.0	21,928.91	높이(m)	-	71.1
건적률(%)	34.89	52.90	주용도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적률(%)	-	985.02	공공시설 위 치 및 면적	-	중구 순화동 1-146 의 12필지 402.6m ²

다. 공람기간: 97. 2. 4~2. 18
라. 공람장소: 중구청 4층 도심개발과

● 성동구공고제 1997-24호

도시계획(안)공람

1. 우리구 금호2가동 501-113 의 1필지 도

니다.

2. 사업시행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
의관계인은 구역변경(건축계획) 지정사
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공
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7. 2. 15

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1) 사업의 명칭: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면적: 중구 의주로1가 30 의
26필지
- (3) 시행면적: 2,077.1m²
- (4) 시행예정자: (주)원방토전 대표이
사 송동수

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과 관련 도시계
획법 제16조의2(주민 동의 의견청취),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청회 및 주민
의 의견청취) 및 서울특별시계획관리위원
회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
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해당

주한 및 이주한 국민에게 보입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및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정비과(290-7385~6) 및 성동구 공원녹지과(290-7395~7)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7. 2. 3~1997. 2. 17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정비과(290-7385~6) 및 공원녹지과(290-7395~7)

1997. 2. 15

성동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정당 시설의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공원	근린공원 성동구 녹수동 산 6-16	572,031	금호2차동 501-113 외 1필지 불산연립부지중 일부
변경	공원	근린공원 성동구 녹수동 산 6-16	573,286	봉근린공원으로 편입 (증)1,255㎡

(2) 관계도면 : 공람장소 배치도면과 같음.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마포구공고제 1997-37호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점을위한공람

1. 건설부고시 제345호(79. 9. 21)로 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80. 5. 19)로 사업계획결정된 도심재개발 마포로1구역 제18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구역을 변경지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2.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에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내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7. 2. 15

마포구청장

가.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

1) 사업명 : 마포로1구역 제18지구 도심재개발사업

2)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정구역 및 면적	마포구 도화동 175-1 일대 2,690.0㎡	마포구 도화동 175-1 외 3필지 2,356.20㎡	계획선 변경없이 현행추진결과에 의거 면적결정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마포구 도화동 181-47 외 2필지 255.0㎡	
건축계획			
· 대지면적	2,690.0㎡	2,101.20㎡	
· 전폭률	21%	56.63%~60.00%	
· 용적률	148%	1,012%~1,10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건축면적	3,990.0m				34,254m	~	39,662.74m		
· 층 수	지상 6층, 지하 1층				지상 22층, 지하 8층				
(높이)	(-)				(103.65m)				
· 용도	업무시설				업무시설				

3) 변경사유: 재개발관련법규 및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공람장소: 마포구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330-2385~8)

다. 공람기간: 1997. 2. 5 ~ 1997. 2. 19 (14일간)

라.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금천구공고제1997-24호**

도시계획(안)공람

1.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

라. 공람내용: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구	분	도시계획(안)	위	치	규	모	비	고
도시계획	주차장 결정	금천구 서흥본동	886-14	의 2필지	A=891.4m		신	설
시	실	주차장 결정	금천구 독산2동	1050-17	A=777.9m		신	설

●**동작구공고제1997-24호**

도시계획사업(일반도로)실시계획공람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1997-2호(97. 1. 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사당동 296-22~296-16간 외 1개소 도로계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997. 2. 15

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금천구청 도시정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7. 2. 15

금천구청장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금천구청 도시정비과(전화 690-2385~7)

다.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동작구청장

1.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작구 사당동 296-22~사당동 296-16
- 동작구 사당동 313-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일반도로)
- 명칭: 사당동 296-22~296-16간 외 1개소 도로계설공사

다. 사업규모: B=6m~8m, L=50m

라.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설명 : 동작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다.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의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설명 : 별첨
 2. 관련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14일간 토지, 건물(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 동작구청 토목과(820-1405~8), 건설관리과(820-1400~2)
 나. 공람기간 : 1997. 2. ~1997. 2.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7-2

사업의 종류 : 사당동 296-22~296-12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권입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성 명	소 유 자	
							주	소
1	사당동 296-46	대	27	27	도로	이팔순 서대문구 연희동 200-80 (강남구 역삼동 814 (주)국민은행)		
2	296-21	대	36	36	도로	박종수 동작구 사당동 279-16 (압류 동작세무서)		
3	296-44	대	9	9	도로	최연순 도봉구 미아동 5-31		
4	296-42	대	46	46	대지	신철수 동작구 사당동 296-2		
5	296-40	대	27	27	대지	박정화 동작구 사당동 산 24		
6	296-16	대	41	41	도로	박종수 동작구 사당동 300-50 (압류 서울특별시) (압류 동작세무서)		
7	313-4	담	135	135	도로	유광만 동작구 사당동 285		
8	313-5	담	43	43	도로	유광만 동작구 사당동 285		
9	313-6	담	2	2	도로	유광만 동작구 사당동 285		



물 건 조 사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7-2

사업의 종류 : 사당동 296-22~296-12간의 1개소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성명	주 소
1	사당동 296-40	건 물 기와/블록 콘 크리트/벽돌 담 장	기와/블록 콘크리트/벽돌	5㎡ 9㎡	주거 장독대 창고 담장	박상화	동작구 사당동 296-17
2	296-42	대문철 건물 콘크리트/블록 담장	대문철 콘크리트/블록	1식 2㎡ 1㎡	대문 주거 화장실 담장	신철수	동작구 사당동 296-2
3	312-3	대문철 담장	대문철	3식 H=1.5m L=3m	대문철 담장	이찬	동작구 사당동 312-3
4	312-8	대문철	대문철	1식	이옥희	동작구 사당동 312-8	
5	312-9	수목 화단	화양목 벽돌	20주 1식	수목 화단	안병훈 박옥수	동작구 사당동 312-9
6	312-4	창고	알루미늄재시	5㎡	창고	윤광만	동작구 사당동 285

●강남구공고제1997-36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7. 2. 15

강남 구 청 장

인가 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97. 2. 4	의장공사업 94-서울-01-213	세터디자인	강남구 동 681-58	박명준 (주)세터디 자인	강남구 동 681-58	박명준	

●송파구공고제1997-27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
설업면허를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37-34
0570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7. 2. 15

송 과 구 청 장

- 1. 양도인가 연월일 : 1997. 2. 5
-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 의장공사업(면허번호 : 91-서울-01-309)
- 3.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성명

가. 양도자

○ 상호 : (주)에드랜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12-2

○ 대표자 : 허영남

나. 양수자

○ 상호 : (주)정든마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2동 874-12

○ 대표자 : 어항직

●강동구공고제 1997-1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

- 1.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1997-2호(97. 1. 24)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동구 길동 306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건설)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 3.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건설관리과,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7. 2. 15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동구 길동 306-5
 나. 사업명 : 길동 306 주변 도로건설공사
 다. 사업 규모 : 도로건설(일반도로)

B=6m, L=28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연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98. 12. 31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공람장소 : 강동구청 건설관리과 및 도로과(480-1400~9)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계획 (㎡)	권입면적 (㎡)	소 용 자	
					상	주 소
1	306-5	대	185	185	대한예수교 장로회 길동교회	강동구 길동 306-1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관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306-5	담 장	시멘트 블록	H=2m L=6m	대한애수로 창르회 길동교회 강동구 길동 335-1

사업소고시

●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 1997-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1997. 2. 15

한강관리사업소장

허 가 연월일	허 가 조건 및 수	운 행 구 간	허 가 기 간	운 행 목 적	허 가 를 받 은 자 성 명 주 소
1997. 1. 31	부선 1척	한강(잠실대교 -행주대교)	1997. 2. 1~ 1999. 1. 31	정담대교 설을 위한	건서울시 강남구 삼성중공업 대치동 690-25 (주) 아태규

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 1997-8호

시의회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
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2. 15

서울특별시교육감

구 분	안 건 명	주 관 부 서
조례(안)	1.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기관의 위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행정관리담당관

인사발령

여 그 직을 면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연구사 신종식
원석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8급 기술직 및 연구직 공무원 연직

발령 제68호(1997. 2. 1)

아동병원 지방간호사기 책상에 원석 의하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및 파견

발령 제69호(1997. 2. 1)

책기물관리과 지방토목주사 전용식 수도권
권역립지 파견근무장제 지하철건설본부
책기물관리과 지방기계원9등급 전명호
수도권역립지 파견근무장제 건설안전관리본
부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기계장7등급 이은
동 책기물관리과 수도권역립지운영관리조합
파견(97. 2. 1~99. 1. 31)

서울특별시

7급 기술직 공무원 진출

발령 제70호(1997. 2. 4)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주
사보 조영삼 대구직할시 진출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 파견

발령 제71호(1997. 2. 1)
책기물관리과 지방행정주사 신현창 수도권
권역립지운영관리조합 파견(97. 2. 1~98.
1. 31)

책기물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장용 수
도권역립지운영관리조합 파견(97. 2. 1~98.
1. 31)

환경계획과 지방행정주사보 최동호 책기
물관리과, 수도권역립지운영관리조합 파견
(97. 2. 1~98. 1. 31)

서울특별시

기능직 공무원 정규임용

발령 제72호(1997. 2. 5)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 10등급시보
송홍석 지방기계원 10등급에 임함

서울특별시

기능직 공무원 면직

발령 제73호(1997. 2. 1)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원 9등급 강동

석 권철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기능직 공무원 면직

발령 제74호(1997. 2. 4)
세종문화회관 지방기계원 9등급 박기덕
천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6급 이하 공무원 진보 및 전임

발령 제75호(1997. 2. 5)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김명근 감사담당관
금천구 지방행정주사보 이상술 서울특별
시전임 감사분서담당관
기초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이동열 감사
담당관

시민과 지방행정주사보 조도영 총무과
관악구 지방행정주사보 박일택 서울특별
시전임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지방행정주사보 국경근 사회
회사무처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민인식 서울특별시
전임 지하철건설본부

서울특별시

기능직 공무원 유직

발령 제76호(1997. 2. 10)
서울지방경찰청 지방사무원(타자) 9등급
맹선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직을 명함(97. 2. 10~98.
2. 9)

서울특별시

5급이하 공무원 진보(정원조정 재발령)

발령 제77호(1997. 2. 3)
조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배철수 감사
담당관
조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우수동 감사담

당관

조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남준영 감사담

당관

조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김상배 감사담

당관

조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황형호 감사담

당관

조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오진완 감사

담당관

조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한광훈 감사

담당관

조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이석근 감사

담당관

조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이한영 감사

담당관

조사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0등

급 김제희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장

기 타

정 정

시보 제2022호(1997. 1. 25자)의 규칙 제 2802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 규칙 별지 1호~7호 서식 누락부분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1997. 2. 15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추 장

상 명 : ○ ○ ○

귀하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
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997 년 2 월 15 일

서울특별시장 ○ ○ ○



(별지 제1호 서식)

승낙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199 년 월 일

성명 : ○ ○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수행상 지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99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

서약자 : ○ ○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4-1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월일	199 . . . (제 회)

의 결 사
항

[Empty rectangular box]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청
제출년월일	199 . . .

27-32
0578

〈별지 제4-2호 서식〉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 결정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2. 제안이유 (일안취지)

3. 도시계획사항

4.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 도시계획안 :
- 일자 및 게재신문 :
- 의견청취기간 :
- 공람장소 :

나. 의견접수사항 :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6.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별첨 제5호서식〉

No.

안 건 명				관 련 사 항
실 의 요 지				
내 용	위 치	변경내용	면적 (㎡)	
상 정 사 유				

(도면)

용지규격 : B4사이즈

(별지 제6호서식)

시 명 부

제 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일 시 :

장 소 :

참석위원 서명

위원성명	서 명	위원성명	서 명

<별지 제7호서식>

년 월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서

인적사항

- 소속 :

- 직 급 :

- 성 명 :

- 담당업무 :

추진실적

추진업무내용	필수추진실적	관련부서

출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한 글	김 정 반	② 소 속	동작구 천호 제3동
		한 자	金正彬	③ 직 명	지방행정서기
	④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211-4			
⑤ 출석이유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과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코자 함			
⑥ 출석일시		1997년 2월 25일 (월) 14시 00분			
⑦ 출석장소		서울시청 3층 기획상황실			

-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7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위원장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명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7년 월 일
성명 (인)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